

건축학 관점에서의 노인 연령기준 An Architectural Engineering Perspective on the Current Chronological Definition for Old Age

김 태 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Taeil Kim
Jeju National University

I. 고령화 사회에서의 건축학 이슈

주택의 상태나 수준은 신체나 정신건강, 또는 질환 등의 측면에서 거주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랫동안 살아왔던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기거하고 싶어도 주택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약으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부득이 거주형태를 변경(relocation)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생의 후반기에 와서 거주형태의 변경 등 갑작스러운 거주환경 변화는 고령자에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인 안정감을 저하시키는데, 특히 건강하지 못한 고령자에게 건강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심지어는 사망하게 하는 사례도 가끔 보고되고 있다.

고령자들이 거주하는 주거환경 개선이나 변경 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건축 관련 사업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최소한 다음의 주요 과제들이 논의·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대영역의 주제로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주택의 보급 확대 그리고 기존의 주택 개조 및 활용¹⁾ 활성화, 건전한 지역공동체의 강화, 이동에 대한 자유로움의 보장 등을 들 수 있다. 소영역의 주제로는 ① 보편적 정주(定住)권을 보장하는 일인데, 예를 들면, 소득의 유무나 고저에 상관없이 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에 대한 지원 강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다양한 세대교류형 주거형태의 제공·확대, 정보통신기술(IT)을 접목한 네트워크형 거주형태의 지원 확대

*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김태일 교수
(e-mail: kimtaeil@cheju.ac.kr)

1) 주택개조에 대한 사업은 수 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도 제정되어 있는 상태임.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② 보편적 이동권리를 보장하는 일인데,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구성이 여기에 속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표현하면, 각종 편의시설의 구성을 목표로 하는 협의의 개념은 물론 의사나 책상, 의류 등 일상생활용품에까지 적용되는 광의의 개념, 즉 UD(Universal design)의 개념에 기반을 둔 지역 및 도시의 이동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그리고 ③ 보편적 생활복지서비스를 보장하는 일인데,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을 통한 생활밀착형 복지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그 예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④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는 일인데, 예를 들면, 제품의 보편화나 표준화를 일컫는다(김태일, 2008).

II. 고령자의 연령기준, 이대로 좋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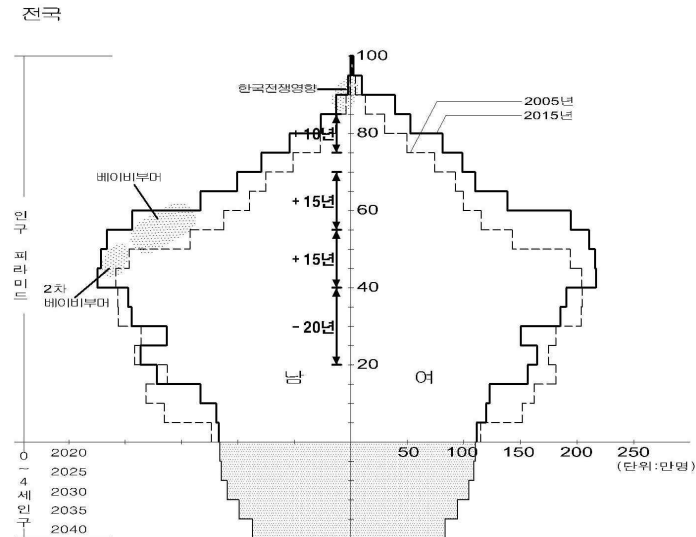
먼저 고령자의 연령기준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의 평균수명이 82.4세(남자 78.99세, 여자 85.48세)로 대부분의 고령자가 80세 이후까지 생존할 수 있는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연령대를 성인전기(25세-35세), 중년기(35세-65세), 및 노년기(65세 이상)로 구분해 왔는데(三浦文夫, 1988), 이는 졸업과 취업, 그리고 결혼, 은퇴라는 일련의 생활단계(life stage)가 반영된 것이다.

국가차원의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통계포털²⁾의 인구·주택총조사 중

2005년도 총조사인구자료, 주민등록인구현황자료 중 행정구역 및 5세별 주민등록인구의 2015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의 10년간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과 연령별, 성별 변화 특징을 살펴본 결과(<Figure 1> 참조), 과거 10년 사이에 각 연령별로 인구변화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나타난 특징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0-4세 아동인구도 일시적으로 증가하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인구는 베이비부머의 영향으로 반세기 전 몇 년 동안 증가하다가 그 이후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곧 현재로는 55세-65세 사이의 준고령층 인구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30대 후반에서 50세 사이의 인구 증가도 두드러지고 있어서 이들이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진입하게 될 시점에는 복지수요계층이 심각한 비율로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 반면에 아동인구의 감소 현상은 장기적으로 교육시설과 지역시설의 공간을 재배치하는 문제나 산업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 등 사회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자 인구가 급증한 상황이라서 과거와 같은 생애 단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두터운 소비층이자 생산층의 중심이 청장년층에서 60-70대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에 맞추면서 각종 정책에 이를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2) 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Figure 1〉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의 인구구조변화
(주: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임)

연령기준의 조정을 통해 늙은 국가가 아니라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국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UN에서는 1950년대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4%미만의 인구를 젊은(young)인구, 4%이상 7%미만의 인구를 성숙한(mature) 인구, 그리고 7%이상일 경우를 노년의(aged) 인구로 정의하기도 했었다(UN, 1956, pp. 7-9). 그러나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65세 이상 인구의 고령화 정도를 3단계, 즉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고령 사회(aged society), 그리고 초고령 사회(super aged society)로 구분하고 있는데, 고령화 사회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비율이 7%이상에서 14%미만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를 의미하며, 고령사회는 14%이상에서 20%미만으로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 그리고 초고령 사회는 고령자 인구비율이 20%이상으

로 고령화가 더 심하게 진행된 사회를 의미하고 있다. 굳이 과거의 기준에 근거하여 늙어가는 국가로 규정하여 대응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혹자는 고령자 기준의 연령을 65세에서 10세 상향하여 75세로 조정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필자가 지적한 문제의 인식과 그 맥이 같다고 생각된다.

III. 노인 연령기준의 상향이 건축학에 미치는 영향

고령자 연령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할 경우 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입주기준에 있어서 큰 변화가 예상되며 또한 입소하는 시설 역시 연령대가 높은 고령층이 실질적인 주 대상자이기 때문에 시설의 운영관리 측면

에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고령인구층의 증가로 인해 고령친화산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대상계층의 변동에 따른 시설계획 및 운영관리계획, 그리고 홍보, 마케팅 전략 등 전반적인 변화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친화산업의 경우 고령자의 기준을 신체적인 기능이 65세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75세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거지원제품을 보다 다양화하여 고령친화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고령자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들 서비스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되는 체계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65세와 달리 75세가 고령자 기준이 될 경우 공간사용 및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개조를 활성화하고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고령자의 신체적 여건 및 주거환경에 적합한 주거관련 제품을 표준화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비록 75세로 고령자 연령기준이 상향되어도 60대와 70대의 고령자 연령과 연결되는 문제 때문에 고령친화 주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내용을 보다 더 세분화·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끝으로 노인건축학을 전공하는 필자로서는 인구사회학적 관점, 도시 및 건축학 측면에서 현실적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인의 연령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태일 (2008). **고령화사회의 주거공간학**. 경기도 파주: 보고사.
- 통계청 (2016). 행정구역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2016).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06).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대전: 통계청.
- UN (1956). *The aging of populations and its economic and social implications* (Population studies, No. 26). New York: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 三浦文夫 (1988). *高齢化社会ときみたち: 21世紀にはどうなる*. 東京: 岩波ジュニア新書.

원고접수일: 2016. 09. 10.
수정원고접수일: 2016. 09. 22.
원고게재승인일: 2016. 10. 20.